

의안번호	2201699
의 퇴 인	이원택의원
회 답 일	2024. 6. 19.
추 계 번 호	24B096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3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4,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억 8,000만원(연평균 5,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농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70	—	—	70	—	140	28
	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70	—	—	70	—	140	28
추가재정소요		140			140		280	56

주: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의2 신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3년마다</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u>시·도지사</u>”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하하여야 함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및 <u>생산비 보장</u>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u>경영안정을 위한 지원</u>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u>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u>	
3	안 제4조(보조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u>경영안정을 위하여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대한의 지원</u>을 하여야 함.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복구 및 지원 금액이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u>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름</u>(제2항)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u>인건비</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해서도 <u>보조 및 지원</u>을 하여야 함(제8항)	의무규정
4	안 제5조 신설 (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둠</u>(제1항) 1.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u>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7항)</u>	
5	안 제7조(응급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¹⁾ 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제1항에 따라 <u>응급조치에 종사한 주민을 포함함</u>)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제3항)</u>	의무규정
6	안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²⁾ 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제1항에 따른 <u>지원 요구를 받아 지원한 자를 포함함</u>)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제3항)</u>	의무규정
7	안 제9조의2 신설(통계의 수집·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1.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 2.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 3. 농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보험목적물 피해에 관한 자료 4. 친환경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에 관한 자료 5. 상습침수구역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u>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u>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u>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u>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u>	의무·재량규정
8	안 제9조의3 신설(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함(제1항)</u>	의무규정

1) 법 제7조(응급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가옥·시설·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법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의2 신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유사사례 참고(제1항) -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비용
		—	- 미대상(제3항)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수립가능할 것으로 예상
2, 3	안 제3조(재해대책) 및 안 제4조(보조 및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어업재해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대한의 지원, 농·산림작물 재입식(다시 심는 경우)에 따른 인건비 지원,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재해복구 및 지원조치를 받은 농어가의 지원금이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며,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그러나 향후 재해피해를 입게 될 농어가 수 및 그 유형, 농·어가별 차액 발생 여부, 생산비 등을 포함한 지원금,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 등은 현시점에서 예측이 불가하여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업재해와 어업재해 피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발생여부 및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관련 비용추계는 곤란한 실정이라는 공통된 의견임 - 참고로 농업재해대책 비용의 경우 2006~2023년 기간 중 집행액은 최저 91억원('15년) ~ 최고 2,460억원('06년)으로서 자연재난에 대한 추가예산소요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임(농림축산식품부) * 집행액: ('06) 2,460억원 → ('08) 251 → ('10) 665 →

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12) 1,973 → (‘14) 144 → (‘15) 91 → (‘18) 1,234 → (‘19) 689 → (‘20) 1,336 → (‘21) 1,456 → (‘22) 650 → (‘23) 1,700																			
4	안 제5조 신설 (농업 및 어업재 해대책 심의위원 회)	—	• 미대상: 현행 법령에 규정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농식품부)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해수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면서 위원구성,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7항), 분과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운영경비는 각 부처의 기본경비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회) <table><tr><th rowspan="2">위원회 (소관부처)</th><th colspan="4">회의개최 횟수</th></tr><tr><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td><td>3</td><td>7</td><td>5</td><td>4</td></tr><tr><td>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td><td>2</td><td>3</td><td>4</td><td>3</td></tr></table>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 해양수산부, 행정기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위원회 (소관부처)	회의개최 횟수				2020	2021	2022	2023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3	7	5	4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	2	3	4	3
위원회 (소관부처)	회의개최 횟수																					
	2020	2021	2022	2023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3	7	5	4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	2	3	4	3																		
5	안 제7조(응급조치)	—	• 미대상: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응급조치 또는 응급대책 지원에 종사한 지역주민, 해당지역 토지등의 수용사용, 재해대책 필요물자 응급수송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 시행령 제13조3)는 응급조치 또는 응급대책 지원 보상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재해대책 명령서(시행령 제12조)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들이 명시적으로 포함됨을 규정하는 것임																			
6	안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7	안 제9조의2 신설(통계의 수집·관리 등)	×	• 제3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제3항), 해당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하는 경우(제4항) 조사연구 및 업무위탁경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조사·연구 범위, 관련 기술 개발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 시책의 구체적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9조의3 신설(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	• 미대상: 피해해농어가에 대해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 통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처리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일정 예산을 편성·집행중

※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표 2] 농어업재해대책 개요

	농업재해대책	어업재해대책
정의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 3) 법 시행령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재해대책	어업재해대책
	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	
목적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태풍, 이상기후 등) 발생으로 양식생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을 통해 신속한 어가경영회복
지원 근거	법 제4조(보조 및 지원)	
지원내용	• 직접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 지원 － 대과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간접 지원: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피해율 50% 이상)에 대하여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지원 • 공공시설 복구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국가관리(국비 100%), 지방관리(국 50%, 지방 50%), 농어촌공사 관리(국 70%, 지방 30%) •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 농가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융자 추가 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 직접지원 － 어선·어망·어구(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증·양식시설복구비, 수산생물 등의 입식, 생계지원비 • 간접지원 － 영어자금 상환연기, 재해대책 특별융자
지원단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9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17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래 시점의 농어업재해 발생 여부 및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예측이 곤란하여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며, 해마다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⁴⁾
 -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업재해대책 복구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해오고 있음

4) 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비비 활용 또는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

※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농업재해대책 복구비 단가인상 세부내역,
[참고자료 3] 농어업재해대책비 집행 현황: 2018~2023년 참고

[표 3] 농어업재해대책비 예결산 현황: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사업명	재해대책비 (1033-302)	재해대책비(융자) ¹⁾ (1033-304)	양식등 재해대책비 (3443-302)
2019	예산	557,64	28,500	10,000
	결산	68,860	6,187	10,842
2020	예산	60,188	8,500	7,500
	결산	133,634	851	8,286
2021	예산	100,000	28,500	8,000
	결산	145,604	1,252	6,150
2022	예산	150,000	8,500	8,000
	결산	65,039	5,893	7,973
2023	예산	200,000	—	8,000
	결산	170,023		16,909
2024	예산	280,000	—	50,000

주: 1) 2023년부터 재해대책비(융자)에서 농업자금이자보전(1038-301) 사업으로 전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각 연도)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재해 대책 기본계획수립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7,000만원으로 가정
 - 유사사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⁵⁾에 따른 재해보험 발진 기본계획 수립 비용

5)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표 4]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계획명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23~'27)(2023.1.)	제1차('23~'2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2023.6.)
용역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용역수행기간	2022. 5. 3. ~ 11. 26.	22.7.7~'23.1.31
용역비	45.5백만원	7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3년마다 농어업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억 8,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5]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농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70	—	—	70	—	140	28
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70	—	—	70	—	140	28
합계	140	—	—	140	—	280	5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농업재해대책

□ 목적

-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

□ 지원 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 내용

- **(직접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를 지원
 -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주요 항목 복구비 부담률 >

(단위: %)

항목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농약대	70	30	—	—
대파대	35	15	30	20
가축입식	35	15	30	20
농림시설	24.5	10.5	55	10

- **(간접 지원)**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피해율 50% 이상)에 대하여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지원
- **(공공시설 복구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 국가관리(국비100%), 지방관리(국50, 지방50), 농어촌공사 관리(국70, 지방30)
-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 － 농가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 * 피해율 30~49% 농가는 1년, 50% 이상 농가는 2년 지원
 - －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용자 추가 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 * 고정금리 1.8%(또는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

2. 어업재해대책

□ 목적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태풍, 이상기후 등) 발생으로 양식생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복구지원을 통해 신속한 어가경영회복

□ 지원 근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지원항목

구분	지원항목	지원비율 (%)	지원조건 및 지원액
직접 지원	어선·어망·어구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보조 35, 용자 55 용자 70 (40톤이상 어선)	지원액 = 기준단가 × 톤수 지원액 = 건조지원 기준 지수
	증·양식시설복구비	보조 35, 용자 55	지원액 = 기준단가 x 피해시설량
	수산생물 등의 입식	보조 50, 용자 30	지원액 = 기준단가 × 피해수량
	생계지원비	보조 100	1인가구 623,300원~6인가구 2,168,300원, 7인이상 1명 증가시 263,800원 추가 피해단위 피해율 50%
간접 지원	영어자금 상환연기	1년	어가단위 피해율 30~50%
		2년	어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재해대책 특별용자	용자 100	해수부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 (지원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참고

[참고자료 2] 최근 5년간 농업재해대책 복구비 단가인상 세부내역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연도별 단가 인상·신설 항목

－ 현실화율*(%): ('18) 48.7 → ('19) 50.8 → ('20) 59.5 → ('22) 59.1 → ('23) 59.9

* 산출방식: 항목별 단가/실거래가('22.기준) × 100) /

** '21년도는 단가조정 없음

연 도	전 체 항목수	항 목 수			현실화율	전년 대비
		계	인 상	신 설		
합 계		294	254	40		
2023	26	26	(26) 시설 8, 대파대 13, 농약대 1, 가축 4	－	59.9%	0.8%p ↑
2022	192	87	(64) 비닐하우스 16, 대파대 13, 농약대 1, 가축입식 18 등	(23) 비닐하우스 12, 농막 2, 대파대 1, 가축입식 3, 곤충 5	59.1%	0.4%p ↓
2020	176	125	(123) 농경지 2, 비닐하우스 20, 대파대 25, 농약대 5 등	(2) 인삼3~4/5~6년근	59.5%	8.7%p ↑
2019	174	21	(16) 농경지 2, 초지 3, 과수재배시설 4, 곤충 1, 대파대 6	(5) 대파대 3, 곤충 2	50.8%	2.1%p ↑
2018	170	35	(25) 대파대 14, 농약대 6, 천적·학습곤충 5	(10) 대파대 3, 곤충 사육사 2, 식용곤충 5	48.7%	3.4%p ↑

□ 주요 농작물 단가 인상내역(발체)

구 분		'18년단가	'20년단가	'22년단가	'23년단가	'22년 실거래가
농약대 (만원/ha)	일반작물(벼 등)	59	74	74	74	79
	채소류	192	240	240	240	240
	과수류	199	249	249	249	272
	인삼	370	370	370	370	498
	약용류	107	157	157	157	182
	화훼류	712	890	1,268	1,572	3,144
대파대 (만원/ha)	일반작물	304	380	380	380	380
	채소(엽근채류)	469	586	586	586	586
	채소(과채류)	707	884	884	884	957
	채소(노지고추)	－	334	334	340	425
	채소(마늘, 생강)	－	1,038	1,038	1,054	1,318
	채소(양파, 대파, 쪽파)	－	571	571	571	620
	채소(토마토, 풋고추, 가지)	1,364	1,840	1,840	1,840	1,840
	사과	1,239	1,437	1,763	1,766	3,532
	배	271	402	517	526	1,051
	복숭아	218	218	306	306	766
가축 입식비 (만원/마리)	소(육성우)	156	156	192	201	402
	돼지(육성돈)	14	21	21	21	35
	산란계(중추)	0.19	0.19	0.19	0.23	0.46
시설 복구비 (원/m ²)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7,940	8,775	8,963	9,168	18,335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9,400	9,400	10,524	10,750	21,500
	인삼재배시설(A형,연목)	2,910	2,910	2,910	2,910	5,030

[참고자료 3] 농어업재해대책비 집행 현황: 2018~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한파 (1.24.~28.)	제주지역 한파로 월동채소 등 언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055호	■ 농작물 4,704ha * 월동무 3,510, 양배추 291, 브로콜리 270, 콜라비 122, 등 ■ 가축폐사 1,501마리*, 꿀 벌 5,129군 * 닭 1,500마리, 말 1마리	■ 13,552백만원 - 보조 12,287(국비 8,601) - 융자 759 - 자부담 506 * 정책자금 상환연기: 3,813
대설 (2.9.~10.)	경남지역 대설로 비닐하우스·과 수시설 파손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1호	■ 농업시설 30ha * 비닐하우스 1, 인삼시설 1.2, 과수시설 28 등 ■ 농작물 5.4ha * 복숭아 2.5, 블루베리 2.3, 체리 0.3, 딸기 0.2 등	■ 822백만원 - 보조 307(국비 215) - 융자 428 - 자부담 87 * 정책자금 상환연기: 62
이상저온 (3~4월)	4월 냉해로 14개 시·도(경북, 전 남, 충북, 전북, 충남, 경남, 경 기, 강원, 세종, 울산, 대구, 대 전, 광주, 부산) 139개 시·군·구 과수 꽃눈 고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6,652호	■ 농작물 44,765ha * 과수 37,864ha, 채소류 4,910, 수신훈 1,991 등	<중대본 심의(우리부 지원)> ■ 120,810백만원 - 보조 120,682(국비 75,644) - 융자 77 / 자부담 51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688
호우·강풍 (5.4~6. 및 5.28~30)	호우·강풍으로 5개 시·도(충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에서 농 작물 침수, 도복, 앞줄기 꺾임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8,119호	■ 농작물 8,057ha * 맥류 5,238, 전작 1,884, 채소 637, 과수 93 등 ■ 꿀벌 7군 ■ 농경지 0.9ha	■ 10,552백만원 - 보조 9,088(국비 6,317) - 융자 881 - 자부담 583 * 정책자금 상환연기 3,882
우박·강풍 (6.8~15)	7개 도(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남, 경기, 전남)에서 우박·호 우·강풍으로 사과 흠집, 잎 파열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9,460호	■ 농작물 5,150ha * 과수 3,7812, 전작 242., 채소 698, 특작·화훼 196 등 ■ 농업시설 1.5ha * 비닐하우스 0.2, 인삼시설 1.2, 축산 0.1 등 ■ 농경지 0.3ha	■ 16,897백만원 - 보조 15,515(국비 10,480) - 융자 856 - 자부담 526 * 정책자금 상환연기 13,896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호우(6.27~7.27) 및 태풍 카눈	16개 시·도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가축 폐사, 비닐하우스, 수리시설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7,078호	■ 농작물 71,416ha * 벼 37,317, 콩 14,661, 채소류 7,752, 과수 4,501 등 ■ 농업시설 269ha * 비닐하우스 92, 양액시설 72, 과수시설 68, 인삼시설 31, 축산시설 5 등 ■ 가축폐사 913천마리*, 꿀벌 13천군, 기타 곤충 43천kg * 닭 852,808마리, 소 826, 돼지 3,867 등 ■ 농경지 1,490ha ■ 공공시설 689개소	<중대본 심의> ■ 341,972백만원 - 보조(사유) 138,460(국비 90,378) <우리부 지원> - 보조(위로금) 73,947(국비 49,887) - 보조(공공) 107,664(국비 55,747) * '23년 6,860 교부, '24년 48,887 교부 - 용자 14,374, 자부담 7,527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9,110
호우 (9.15~17, 9.20~21) 및 우박 (10.14, 26)	7개 도(경남, 충남, 제주, 전남, 경북, 충북, 강원)에서 호우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흠집, 벼 도복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2,986호	■ 농작물 6,697ha * 단감 2,404, 사과 2,218, 벼 1,187, 채소류 673 등 ■ 농업시설 0.1ha ■ 농경지 1.5ha	■ 17,940백만원 - 보조 17,170(국비 12,019) - 용자 469 - 자부담 301 * 정책자금 상환연기 3,190
우박 (11.17)	제주에 우박이 내려 감귤 낙과·흠집, 쪽파 꺾임 피해 * 피해 농가수: 145호	■ 농작물 43.9ha * 감귤 42.4, 쪽파 1.5	■ 140백만원 - 보조 140(국비 98)
대설·한파 (12.20~22)	대설·한파로 인한 4개도(전남, 전북, 제주, 충남) 양파, 대파, 무 등 농작물 언피해 및 농업시설 파손 * 피해 농가수: 2,189호	■ 농작물 972.6ha * 양파 597.2, 대파 272.9, 무 70.2 등 ■ 농업시설 22.8ha * 비닐하우스 20.5, 축산시설 1.9, 과수시설 0.4	■ 6,820백만원 - 보조 4,135(국비 2,895) - 용자 2,231 - 자부담 454 * 정책자금 상환연기 9,801
합 계		■ 농작물 141,810.9ha ■ 농업시설 323.4ha ■ 가축폐사 914.5천마리, 꿀벌 18천군, 기타곤충 43천kg ■ 농경지 1,492.7ha ■ 공공시설 689개소 * 피해 농가수: 229,785호	<합계: 529,505백만원> · (중대본) : 138,460 - 보조(사유): 138,460(국비 90,378) · (농식품부) : 391,045 - 보조(사유): 253,271(국비 166,156) - 보조(공공): 107,664(국비 55,747) * '23년 6,860 교부, '24년 48,887 교부 - 용자 : 20,075 / 자부담 : 10,035 * 정책자금 상환연기: 176,442

○ 2022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호우·강풍 (3.25.~26.)	전남 보성(호우), 제주 제주·서귀포(강풍)으로 농작물 침수, 도복, 잎·줄기 꺾임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01호	■ 농작물 260ha * 보리 98.5, 밀 23.8, 옥수수 94.6, 단호박 42.6, 수박 0.2	■ 377백만원 - 보조 351(국비 246) - 용자 16 - 자부담 1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 (5.24.)	경북 6개(안동, 청송, 영양 등) 지역 우박으로 사과 흠집, 고추 잎 파열 등 노지작물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179호	■ 농작물 819ha * 과수 754, 채소 63, 전작 2, 특작 0.7 · 사과 722, 고추 42, 자두 16, 배추 13 등	■ 2,403백만원 - 보조 2,403(국비 1,682) * 영농자금 상환연기 5,207
우박 (6.24.~25.)	경북 봉화지역 우박으로 사과 흠집·낙과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18호	■ 농작물 163ha * 과수 160.4, 채소 2.6 · 사과 158.3, 블루베리 1.3 등	■ 457백만원 - 보조 457(국비 320) * 영농자금 상환연기 23
호우 (6.28.~7.1.)	경기·강원·충남 지역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413호	■ 농작물 918ha * 벼 476.8, 전작 307.3, 채소 78.5, 과수 19.8, 특작 31.8, 기타 3.8 ■ 농경지 32.7ha ■ 농업시설 0.5ha	■ 3,208백만원 - 보조 2,099(국비 1,469) - 용자 742 - 자부담 367 * 영농자금 상환연기 50
가뭄 (6~7월)	전남(무안·영광·진도·신안) 지역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고사, 시들음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692호	■ 농작물 1,442ha * 벼 1,429(영광 171, 진도 21, 신안 1,238), 콩 12(무안), 고구마 1(무안)	■ 1,318백만원 - 보조 1,231(국비 862) - 용자 52 - 자부담 35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태풍 ‘송다’ (7.30.~8.1.)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전남 순천, 보성 지역 농작물 낙과, 도복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66호	■ 농작물 123ha * 벼 19, 과수 100(배 97, 복숭아 2 등), 특작 4	■ 316백만원 - 보조 308(국비 216) - 용자 5 - 자부담 3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호우 (8.8.~17.)	중부지방 중심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0,175호	■ 농작물 4,219ha * 벼 1,327, 과수 817, 전작 306, 채소 1,278, 특작 428, 기타 63 ■ 농경지 410ha ■ 농업시설 22ha ■ 가축폐사 33,910마리, 꿀벌 3,366군 ■ 수리시설 57개소	<중대본 심의> ■ 49,546백만원 - 보조(사유) 21,287(국고 13,808)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2,065(국고6,463) - 용자 8,604, - 자부담 7,590 * 영농자금 상환연기 8,472
호우 (8.19.~20.)	충북 충주, 음성에 호우로 인해 농작물 침수·낙과,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585호	■ 농작물 76ha * 벼 4, 전작 3, 채소 2, 과수 57(복숭아 56 등), 특작 10 ■ 농경지 4ha ■ 농업시설 0.1ha	■ 419백만원 - 보조 333(국비 233) - 용자 62 - 자부담 24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제11호 태풍 (힌남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도복, 벼·옥수수·백수, 농경지 유실·매물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7,502호	■ 농작물 49,105ha * 벼 29,000, 과수 7,514, 전작 4,768, 채소 7,402, 특작 285, 기타 136 ■ 농경지 331ha ■ 농업시설 45ha ■ 가축폐사 12,793마리, 꿀벌 4,587군 ■ 수리시설 22개소	<중대본 심의> ■ 132,836백만원 - 보조(사유) 77,972(국고 41,395)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44,377(국고 30,350) - 용자 7,571, - 자부담 2,916 * 영농자금 상환연기 12,688
대설·한파·강풍 (12.21.~24.)	전라지역 중심 대설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위주로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350호	■ 농작물 52.4ha * 과수 12, 채소 27, 특작 7 등 ■ 농업시설 105.4ha * 비닐하우스 67, 인삼시설 23, 축산시설 9, 과수시설 6 등 ■ 가축폐사 13,729마리, 꿀벌 3,893군	<중대본 심의> ■ 14,671백만원 - 보조(사유) 4,810(국고 2,790) <우리부 지원> - 용자 8,231 - 자부담 1,630
합 계		■ 농작물 57,177ha ■ 농업시설 173ha ■ 농경지 778ha ■ 가축폐사 60,432마리, 꿀벌 11,846군 ■ 수리시설 79개소 * 피해 농가수: 64,581호	<합계: 205,551백만원> · (중대본): 104,069 - 보조(사유): 104,069(국비 57,993) · (농식품부): 101,482 - 보조(사유): 7,182(국비 5,028) - 보조(공공): 56,442(국고 36,813) - 용자: 25,283 / 자부담: 12,575 * 영농자금 상환연기: 26,440

○ 2021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한파(1차) (1.8.~1.10.)	4개 시·도(광주·전북·전남·제주) 한파로 시설작물, 월동채소 등 연피해 발생 * 피해 증상이 바로 확인되는 배추, 무 등 월동채소 중심 * 피해 농가수: 6,813호	■ 농작물 8,886ha * 채소 8,116, 전작 553, 특작 125 등 ■ 가축 98마리, 꿀벌 363군 * 염소 90, 송아지 4, 말 4	■ 22,299백만원 - 보조 21,258(국비 14,869) - 융자 652 - 자부담 389 * 영농자금 상환연기 3,960
대설 (3.1.~3.2.)	강원지역 대설로 15개 시군 농업시설물, 농작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213호	■ 농업시설 114ha * 비닐하우스 57, 인삼시설 42, 과수시설 13 등 ■ 농작물 8ha ■ 꿀벌 493군, 염소1마리	■ 11,260백만원 - 보조 4,044(국비 2,831) - 융자 6,094 - 자부담 1,122 * 영농자금 상환연기 10
한파(2차) (1.8.~1.10.)	6개 시·도(광주·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 과수 갈변·고사, 밭작물 고사 등 연피해 발생 * 피해 증상이 4월 이후에 확인된 과수, 마늘·양파 등 밭작물 등 * 피해 농가수: 7,844호	■ 농작물 3,481ha * 과수 2,645, 채소 520, 특작 308, 기타 8	■ 12,218백만원 - 보조 11,936(국비 8,355) - 융자 169 - 자부담 113 * 영농자금 상환연기 8,761
이상저온 (4월)	9개 시·도(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과수 꽃눈 고사 등 * 피해 농가수: 42,933호	■ 농작물 27,716ha * 과수 26,057, 맥류 895, 전작 101, 채소 106, 특작 424, 기타 133	■ 78,050백만원 - 보조 77,867(국비 54,507) - 융자 110 - 자부담 73 * 영농자금 상환연기 24,003
마늘쫘 2차분화 (5월)	1월 하순~3월 고온과 4~5월 잦은비로 3개 시·도(충북, 충남, 경북) 한지형 마늘 별마늘 피해 * 피해 농가수: 1,338호	■ 마늘 400ha(충북 63, 충남 229, 경북 108)	■ 1,175백만원 - 보조 1,175(국비 822)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집중호우 (7.5.~8.)	4개 시·도(충남·전북·전남·경남) 농작물 침수, 농업시설물 등 피해(전남 피해가 대부분) * 피해 농가수: 12,927호	■ 농작물 27,661ha ■ 농경지 111ha ■ 농업시설 11ha ■ 가축폐사 108천수, 꿀벌 806군 ■ 수리시설 146개소	<중대본 심의> ■ 30,943백만원 - 보조(사유) 26,275(국고 17,654)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809(국고1,245) - 융자 2,084, - 자부담 775 * 영농자금 상환연기 2,117
우박 (6.22, 7.10, 7.15, 7.17.)	6개 시도(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과실 흡집, 잎·줄기 파열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223호	■ 농작물 987ha * 과수 687, 전작 64, 채소 150, 특작 86	■ 2,953백만원 - 보조 2,746(국비 1,922) - 융자 124, - 자부담 83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폭염 (7~8월)	5개 시도(경기·충북·충남·대전·세종) 과수 일소피해, 인삼 잎마름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102호	■ 농작물 1,546ha * 과수 263, 전작 11, 채소 68, 특작 1,202, 기타 2 ■ 가축폐사 3천수(육계)	■ 6,103백만원 - 보조 5,898(국비 4,129) - 융자 123 - 자부담 82 * 영농자금 상환연기 85
우박 (8.18.)	전남(영암·함평) 지역 우박으로 벼 낱알 떨어짐, 노지작물 잎 손상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29호	■ 농작물 211ha * 벼 114.4, 과수 31.1(배 19.3, 단감 11.5, 블루베리 0.3), 전작 65.3(고구마 64.7, 콩 0.6)	■ 234백만원 - 보조 234(국비 164) * 영농자금 상환연기 280
태풍 '오마이ς' (8.21.~25.)	5개 시도(충남·전북·경북·경남·부산) 벼 흑수,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3,071호	■ 농작물 7,595ha * 벼 7,118, 과수 233, 전작 37, 채소 186, 특작 8, 기타 13) ■ 농경지 60ha ■ 농업시설 5ha ■ 꿀벌 844군 ■ 수리시설 24개소	<중대본 심의> ■ 8,546백만원 - 보조(사유) 7,247(국고 3,980)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73(국고87) - 융자 791 - 자부담 335 * 영농자금 상환연기 98
집중호우 (8.31.~9.1.)	충남 지역 벼 침수, 고추·콩 등 노지작물 침수 피해 * 피해 농가수: 532호	■ 농작물 188ha * 벼 63, 전작 27, 채소 76, 과수 6, 특작 12, 기타 4 ■ 농경지 19ha ■ 농업시설 0.1ha ■ 꿀벌 80군	■ 1,253백만원 - 보조 825(국비 578) - 융자 286 - 자부담 142 * 영농자금 상환연기 358
태풍 '찬투' (9.14.~17.)	제주 지역 월동무, 양배추 등 노지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5,117호	■ 농작물 9,633ha * 전작 3,475, 채소 5,998, 특작 129, 과수 25, 밭벼 6 ■ 농경지 0.6ha	■ 21,092백만원 - 보조 18,983(국비 13,288) - 융자 1,267, - 자부담 842 * 영농자금 상환연기 359
우박·강풍 (9.22.)	전북(정읍, 부안), 전남(담양), 경북(안동) 지역 벼 도복·낱알 떨어짐, 과수 흠집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633호	■ 농작물 543ha * 벼 423, 과수 107, 전작 9, 채소 4	■ 671백만원 - 보조 666(국비 466) - 융자 3, - 자부담 2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벼 이삭도열병 (‘21.8~9월)	‘21년 8~9월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 저온현상, 일조부족 등 기상요인으로 전북지역 벼 병해 피해 * 피해 농가수: 20,067호	■ 벼 40,425ha	■ 33,140백만원 - 보조 33,140(국비 23,198) - 융자 0 - 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강풍 (10.1.)	경기, 충북, 충남 지역 과수 낙과 및 타박·파열, 벼 도복·탈립, 채소 잎·열매 파열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254호	■ 농작물 2,416ha * 벼 1,832, 과수 433, 채소 118, 전작 17, 특작 15, 기타 1 ■ 농업시설 6.5ha	■ 3,665백만원 - 보조 3,346(국비 2,342) - 융자 225 - 자부담 94 * 영농자금 상환연기 921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한파 (10.16.~18.)	전북 진안지역 배추 결구불량, 무게 감소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333호	■ 농작물(배추) 90.3ha	■ 250백만원 - 보조 250(국비 175) - 용자 0, - 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 (11.10.)	전남 영광지역 대파 잎이 부러 지거나 상처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59호	■ 농작물(대파) 291.8ha	■ 764백만원 - 보조 764(국비 535) - 용자 0, - 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합 계		■ 농작물 132,078ha ■ 농업시설 136.5ha ■ 농경지 190.6ha ■ 가축폐사 111천수, 양봉 2,586군 ■ 수리시설 170개소 * 피해 농가수: 109,788호	<합계: 234,616백만원> · (중대본): 33,522 - 보조(사유): 33,522(국비 21,634) · (농식품부): 201,094 - 보조(사유): 183,132(국비 128,181) - 보조(공공): 1,982(국고1,332) - 용자: 11,928 / 자부담: 4,052 * 영농자금 상환연기: 40,952

○ 2020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이상저온 (4월)	13개 시·도 과수 개화기, 노지 작물 정식기 저온 피해 * 피해 농가수: 74,204호	■ 농작물 43,554ha * 과수 37,111, 맥류 2,950, 전작 1,820, 채소 1,106, 특 작 445, 기타 122	■ 98,634백만원 - 보조 98,049(국비 68,645) - 융자 351(351) - 자부담 234 * 영농자금 상환연기: 32,385
마늘인편 2차분화 (5월)	겨울철 고온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남도종 마늘의 인편 2차분화(벌마늘) 피해 * 피해 농가수: 1,970호	■ 마늘 644ha	■ 1,586백만원 - 보조 1,586(국비 1,110) - 융자·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우박 (5.29.~6.6.)	5.29일 경북, 6.6일 전북·전남·경남 내륙·산간지역 사과, 고추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477호	■ 농작물 1,273ha * 과수 1,020, 채소 211, 전 작 26, 특작 16	■ 2,941백만원 - 보조 2,941(국비 2,059) - 융자·자부담 0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집중호우 (7.28.~ 8.11)	집중호우 영향으로 전국적 농작물 침수, 가축폐사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47,767호	■ 농작물 34,175ha ■ 유실·매몰 2,937ha ■ 시설물 237ha ■ 가축폐사: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꿀벌 26천군 등 ■ 수리시설 958개소	<중대본 심의> ■ 325,532백만원 - 보조(사유) 127,200(국고 85,500)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175,601(국고 92,803) - 융자 (56,677) - 자부담 22,731 * 영농자금 상환연기: 39,987
태풍 ‘바비’ (8.26~8.27)	전남, 제주 중심으로 7개 시도 농작물 낙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4,645호	■ 농작물 8,902ha ■ 유실·매몰 4.6ha ■ 시설물 12ha ■ 가축폐사: 돼지 70, 오리 2,000마리, 꿀벌 211군	■ 9,572백만원 - 보조 9,416(국고 6,592) - 융자 0(429) - 자부담 156
태풍 ‘마이삭’, ‘하이선’ (9.2~.3, 9.6~7)	충청, 전라, 경상 등 전국 16개 시도 농작물 낙과, 도복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41,436호	■ 농작물 115,028ha ■ 유실·매몰 185ha ■ 시설물 177ha ■ 가축폐사: 한우14마리, 돼지1,530, 가금류 11천수, 꿀벌 6천군 등 ■ 수리시설 193개소	<중대본 심의> ■ 140,206백만원 - 보조(사유) 130,900(국고 72,500) <우리부 지원> - 보조(공공) 4,573(국고2,426) - 융자 500(11,679) - 자부담 4,233 * 영농자금 상환연기(3개태풍): 21,730
합 계		■ 농작물: 203,576ha ■ 유실매몰: 3,126ha ■ 농림시설: 426ha ■ 가축폐사: 1,930천마리, 꿀벌 32천군 ■ 공공(수리)시설: 1,151개소 * 피해 농가수: 271,499호	<합계: 578,471백만원> · (중대본): 258,100 - 보조(사유): 258,100(국비158,000) · (농식품부): 320,371 - 보조(사유): 111,992(국비78,406) - 보조(공공): 180,174(국비95,229) - 융자: 851(69,136) / 자부담: 27,354 * 영농자금 상환연기: 94,102

○ 2019년

－ 자연재난(13건)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국비 복구지원액
이상저온 (3~4월)	7개 시·도 과수 개화기, 노지작물 정식기 저온 피해 * 피해 농가수: 11,089호	■ 농작물 7,378ha * 과수 6,553, 전작 482, 특작 195, 채소 148	■ 12,508백만원 － 보조 12,254, 융자 254 * 영농자금 상환연기: 14,607
대 설 (4.9~10.)	강원·경북 대설(10~25cm)로 인삼재배시설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61호	■ 농작물 3ha ■ 농업시설 41.4ha ■ 축산시설 0.6ha	■ 1,193백만원 － 보조 389, 융자 804 * 영농자금 상환연기: 3
서리·저온 (5.7.~9.)	강원·충북·전북·경북 내륙·산간지역 사과 꽃눈, 고추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9,464호	■ 농작물 7,211ha * 과수 6,930, 채소 189, 전작 9, 특작 등 83	■ 12,216백만원 － 보조 12,216, (융자 339) * 영농자금 상환연기: 4,669
우 박 (5.14.)	경북·경남에 직경 1cm 내외의 우박이 내려 마늘·양파 위주 피해 * 피해 농가수: 237호	■ 농작물 220ha * 채소 194, 전작 22, 과수 4	■ 354백만원 － 보조 331, 융자 23 * 영농자금 상환연기: 121
호우·강풍 (5.17~19.)	전남·제주에 호우·강풍으로 감자·맥류 등 노지작물 피해 * 피해 농가수: 229호	■ 농작물 637ha * 전작 312, 특작 186, 맥류 85, 채소 등 54	■ 1,158백만원 － 보조 766, 융자 392
고 온 (5월 상순)	전남 지역 대서종 마늘 인편 투명화·무름 피해 * 피해 농가수: 1,595호	■ 마늘 679ha	■ 1,174백만원 － 보조 1,174
우 박 (6.15.)	충북·경북에 직경 0.2~2cm의 우박이 내려 사과 과실 타박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022호	■ 농작물 1,588ha * 과수 1,426, 채소 123, 전작 19, 특작 등 20	■ 2,479백만원 － 보조 2,479, (융자 2) * 영농자금 상환연기: 992
태풍‘다나스’ (7.18.~20.)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882호	■ 농작물 3,443ha ■ 농업시설 0.6ha	■ 2,720백만원 － 보조 2,720, (융자 643) * 영농자금 상환연기: 464
호 우 (7.24.~28.)	전국 호우로 충청, 전북 농작물 등 침수 피해 * 피해 농가수: 672호	■ 농작물 408ha ■ 꿀벌 130군	■ 660백만원 － 보조 660, (융자 379) * 영농자금 상환연기: 96
태풍‘링링’ (9.6.~7.)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전국적으로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8,015호	■ 농작물 29,056ha ■ 농업시설 141ha ■ 가축폐사 25천수, 꿀벌 1,792군	<중대본 심의> ■ 80,400백만원 － 보조 80,400, (융자 12,869) * 영농자금 상환연기: 10,739
호 우 (8.27.~9.1)	가을장마로 인한 제주지역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54호	■ 농작물 2,190ha	■ 2,293백만원 － 보조 2,293, (융자 364) * 영농자금 상환연기: 443
태풍‘타파’ (9.21.~23.)	제17호 태풍 타파로 전라, 경상, 제주 지역 중심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0,722호	■ 농작물 23,600ha ■ 농업시설 116ha ■ 가축폐사 2천수, 꿀벌 813군	■ 19,120백만원 － 보조 19,120, (융자 2,827) * 영농자금 상환연기: 10,400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국비 복구지원액
태풍‘미탁’ (10.1.~3.)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강원, 전라, 경상, 제주 지역 중심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8,786호	■ 농작물 21,509ha ■ 농경지 718ha ■ 꿀벌 12,180군 ■ 공공시설 154개소 등	<중대본 심의> ■ 30,712백만원 - 보조 30,712, (용자 9,418) * 영농자금 상환연기: 9.584
총 13건		■ 농작물 97,922ha ■ 농업시설 299ha ■ 가축 27천수, 꿀벌 15천군 등 * 피해 농가수: 145,928호	■ 166,987백만원 - 농가 보조 153,302, 용자 1,473 - 지자체(공공시설 피해) 보조 12,213 * 영농자금 상환연기: 52,158

* 국비 복구지원액중 ()내서 용자금액은 실수요를 감안, 집행유보한 금액임

－ 사회재난(1건)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지원액(국비)
동해안 산불 (4.4.~6.)	산불로 강원 5개 시군의 농기계 및 농업시설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670호	■ 농작물 19ha ■ 가축 44,231마리 ■ 농업시설 3.5ha ■ 농기계 755대 ■ 공공시설 7개소	■ 6,960백만원 - 보조 2,246, 용자 4,714 * 영농자금 상환연기: 327 * 재해대책경영자금: 4,000

○ 2018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한파, 대설	1~2월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농작물 6,038ha · 농업시설 18ha · 축산시설 3ha · 꿀벌 746군 * 피해 농가수: 611호	· 계: 21,718백만원 - 보조 14,264(국비 9,986) - 용자 5,273 - 자부담 2,181 - 상환연기·이자감면 1,325
대설	3.7~8일	울산, 대구, 충북, 전북, 경북, 경남	· 농작물: 258ha · 농업시설: 662ha · 축산시설 1.7ha · 가축: 27수 * 피해 농가수: 2941호	<중대본 지원> · 계: 14,439백만원 - 보조 6,170(국비 3,375) - 용자 8,269
이상저온	4.7~8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농작물: 50,466ha · 산림작물: 4,705.7ha * 피해 농가수: 69100호	· 계: 102,313백만원 - 보조 100,151(국비 69,809) - 용자 1,297 - 자부담 865 - 상환연기·이자감면 35,569
강풍	4.10일	인천	· 농업시설: 10.1ha · 축산시설: 72m ² * 피해 농가수: 154호	· 계: 369백만원 - 보조 130(국비 91) - 용자 21 / - 자부담 38
호우	5.16~18일	강원	· 농작물: 76ha · 농경지: 75ha * 피해 농가수: 1132호	· 계: 2,122백만원 - 보조 1,262(국비 883) - 용자 630 / - 자부담 230
우박	5.29~30일	울산, 경북	· 농작물: 487ha * 피해 농가수: 953호	· 계: 1,225백만원 - 보조 1,190(국비 833) - 용자 21 / - 자부담 14 - 상환연기·이자감면 102
호우	6.26~7.4일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농작물: 9,178.5ha · 농경지: 86.7ha · 농림시설: 0.8ha · 축산시설: 199m ² · 가축: 10,656마리, 꿀벌 222군 · 공공시설: 수리시설 13개소, 기타 5개소 * 피해 농가수: 9,752호	<중대본 지원> · 계: 3,899백만원 - 보조 3,899(국비 2,729) <농식품부 지원> · 계: 3,175백만원 - 보조(공공) 3,175(국비 1,587)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태풍 (솔릭)	8.21~24일	전국	■ 농작물 27,566ha ■ 농업시설 5ha ■ 축산시설 36ha ■ 농경지 3ha * 피해 농가수: 18,777호	<중대본 지원> · 계: 24,393백만원 - 보조 24,393(국비 17,075)
호우	8.26~9.1일		■ 농작물 2,791ha ■ 농업시설 1ha ■ 축산시설 5ha ■ 농경지 123ha ■ 공공시설 49개소 * 꿀벌 2,281군(태풍·호우 포함) * 피해 농가수: 7222호	<농식품부 지원> · 계: 4,842백만원 - 보조(공공) 1,019(국비 510) - 용자 3,823
폭염·가뭄	7~8월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농작물 22,509ha ■ 가축 9,078,528마리, 꿀벌 651군 * 피해 농가수: 25,891호	· 계: 54,974백만원 - 보조 49,537(국비 34,676) - 용자 3,342 - 자부담 2,095
호우	9.12~13일	제주	■ 농작물 3,964ha ■ 가축 90마리, 꿀벌 90군 ■ 농경지 1ha * 피해 농가수: 2,139호	· 계: 7,172백만원 - 보조 5,839(국비 4,087) - 용자 802 / - 자부담 51
태풍 (콩레이)	10.5~7일	제주, 전남, 경북, 경남	■ 농작물 11,687ha ■ 가축 23,946마리, 꿀벌 2,038군 ■ 농업시설 36ha ■ 농경지 56ha ■ 공공시설 80개소 * 피해 농가수: 14,258	<중대본 지원> · 계: 16,486백만원 - 보조 16,486(국비 11,540) <농식품부 지원> · 계: 8,642백만원 - 보조(공공) 6,501(국비 3,859) - 용자 2,141
합 계			■ 농작물 135,020ha ■ 가축 9,113,247마리, 꿀벌 6천군 ■ 농업시설 733ha ■ 축산시설 46ha ■ 농경지 345ha ■ 공공시설 147개소	< 합계: 265,309백만원 > · (중대본): 50,948 - 보조(사유): 50,948(국비 34,719) · (농식품부): 214,361 - 보조(사유): 172,373(국비 120,365) - 보조(공공): 10,695(국비 5,956) - 용자: 25,819 - 자부담: 5,474

□ 해양수산부

○ 2023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저수온	1~3월	전남,경남	· 61어가, 4,808백만원 · 어류(돔류, 조기류) 1,925천마리	· 계: 4,044백만원 - 보조 1,769(국비 1,238) - 용자 1,365 - 자부담 910
고수온	7~9월	전남,경남, 경북	· 825어가, 43,829백만원 · 어류(조피볼락, 넙치, 강도다리 등) 31,779천마리 · 멍게 2천줄	· 계: 31,142백만원 - 보조 13,956(국비 9,782) - 용자 10,311 - 자부담 6,874
빈산소수괴	7~10월	경남	· 74어가, 1,493백만원 · 굴·홍합 2천줄	· 계: 1,473백만원 - 보조 746(국비 522) - 용자 436 - 자부담 290
합 계			■ 총 960 어가 ■ 어류 33,704천마리 ■ 굴·홍합·멍게 등 4천줄	< 합계: 36,659백만원 > - 보조: 16,471(국비 11,543) - 용자: 12,113 - 자부담: 8,075

○ 2022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이상조류	1~2월	전남	· 653어가, 647백만원 · 김 48천책, 다시마 8천줄	· 계: 631백만원 - 보조 358(국비 250) - 용자 164 - 자부담 110
강풍	3월	전남	· 413어가, 446백만원 · 김 1천책 · 미역·다시마 등 12천줄	· 계: 427백만원 - 보조 209(국비 146) - 용자 164 - 자부담 55
고수온	7~9월	전남	· 64어가, 956백만원 · 조피볼락 851천마리	· 계: 891백만원 - 보조 453(국비 317) - 용자 263 - 자부담 175
합 계			■ 총 1,130 어가 ■ 어류 851천마리 ■ 다시마·미역 등 20천줄 ■ 김 58천책	< 합계: 35,980백만원 > - 보조: 17,553(국비 12,227) - 용자: 11,028 - 자부담: 7,399

○ 2021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팽생이 모자반	1~4월	전남	· 623어가, 1,969백만원 · 김 99,237책, 다시마 9,829줄	· 계: 2,047백만원 - 보조 1,075(국비 753) - 용자 583 - 자부담 389
고수온	7~8월	경남, 전남	· 3,961어가, 34,235ha, 29,232백만원 · 어류(조개·멸치·말뚝지·감성돔 등) 전복 17,970천마리 · 멍게·굴·가리비·미역 등 802줄 · 새고막 1,813톤	· 계: 25,027백만원 - 보조 12,027(국비 8,366) - 용자 7,768 - 자부담 5,231
이상조류 (빈산소영양염류)	9~12월	경남	· 537어가, 9,644백만원 · 굴 11천줄	· 계: 8,905백만원 - 보조 4,450(국비 3,108) - 용자 7,768 - 자부담 5,231
합 계			■ 총 397어가 ■ 어류·전복 17,970 천마리 ■ 굴·멍게·다시마·미역·가리비 등 22천줄 ■ 새고막 1,813톤	< 합계: 35,980백만원 > - 보조: 17,553(국비 12,227) - 용자: 11,028 - 자부담: 7,399

○ 2020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강풍, 풍랑	6월	전남	· 21어가, 584백만원 · 전복 493천마리, 가두리 667칸, 관리선 6척 등	· 계: 373백만원 - 보조 170(국비 119) - 용자 146 - 자부담 58
빈산소수괴	7~8월	경남	· 271어가, 379ha, 5,549백만원 · 굴·홍합·미더덕·멍게 70천줄	· 계: 5,236백만원 - 보조 2,676(국비 1,858) - 용자 1,548 - 자부담 1,032
태풍	8월	전남	· 79어가, 1,369ha, 1,671백만원 · 어류·전복 1,697천마리 · 다시마·굴 등 841줄 · 가두리 5,128칸 등 시설	· 계: 922백만원 - 보조 437(국비 306) - 용자 329 - 자부담 156
저염분	8~9월	경남	· 26어가, 12ha, 597백만원 · 숭어 237천마리	· 계: 165백만원 - 보조 85(국비 59) - 용자 48 - 자부담 32
합 계			■ 총 397어가 ■ 어류·전복 2,427 천마리 ■ 굴·홍합·미더덕·멍게·다시마 등 71천줄 ■ 가두리 5,795칸 ■ 가두리 관리선 6척 등 시설	< 합계: 6,717백만원 > - 보조: 3,367(국비 2,342) - 용자: 2,072 - 자부담: 1,278

○ 2019년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강풍, 풍랑	3월	전남	· 87어가, 980백만원 · 김2,692책, 미역1,534줄, 다사마168줄등	· 계: 666백만원 - 보조 242(국비 169) - 용자 359 - 자부담 65
고수온	7~8월	경남, 경북,부산	· 102어가, 78.6ha, 967백만원 · 어류(넙치, 조피볼락 등) 404천마리, 명게 236줄	· 계:419백만원 - 보조 212(국비 143) - 용자 124 - 자부담 83
적조	8~9월	경남, 전남	· 50어가, 42.3ha, 2,439천마리, 4,167백만원 · 넙치, 조피볼락 등 어류	· 계: 1,484백만원 - 보조 625(국비 436) - 용자 514 - 자부담 345
태풍	9월	전남	· 58어가, 3.69ha, 2,099백만원 · 조피볼락 등 어류 778천마리 · 명게 16줄, 가두리 198칸 등 시설	· 계: 2,122백만원 - 보조 959(국비 671) - 용자 819 - 자부담 344
합 계			■ 총 247어가 ■ 어류·전복 3,621 천마리 ■ 명게 252줄 ■ 김 2,692책 ■ 미역 1,534줄, 다사마168줄	< 합계: 4,692백만원 > - 보조: 2,038(국비 1,419) - 용자: 1,817 - 자부담: 837